

##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2 및 고흥군의회의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 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이유
  - 고흥군 도화면와 봉래면 일부 섬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편의와 복리증진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행정구역 변경의 대상이 되는 섬을 특정 및 취지규정
  - 지역주민과 양식업자 등 어업인들의 권익보장
4. 입법예고기간 : 2022. 7. 29. ~ 8. 17(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 2) 전화 : 061-830-6065
- 3) 팩스 : 061-830-5595
- 4) 고흥군의회 홈페이지 : [www.coucil.goheung.go.kr](http://www.coucil.goheung.go.kr)

##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830-60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 제7조 제1항 단서 및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흥군 산하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4.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양식업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양식업종사자”란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지구별수협”이란 『수산업협동조합』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함)는 면의 행정구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섬 지역 등 수면의 경계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어업 및 양식업 활동과 해상자원 보호·개발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양식업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면허를 받은 지구별수협이 어업인들에 대해 부당하게 면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2장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제4조(변경대상)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로 되어 있는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에 대한 면 단위 행정구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 변경은 수면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활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보장 정책 시행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 ①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의 행정구역은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군 도화면’으로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함께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 등에 반영)

① 다른 조례에서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에 관한 행정구역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제1항의 4개 섬 행정구역에 관한 공부의 기재내용을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군 도화면’으로 변경하는 업무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제3장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7조(지구별수협 면허 변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라 그 수면에서 가까운 지구별수협 등에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양식업 등에 관한 면허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구별수협의 통폐합 등) 군수는 어업 및 양식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제9조(면허 받은 자에 대한 관리) 군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 특례 제도로 면허를 한 경우, 면허를 받은 지구별수협 등이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폭리행위를 취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0조(시책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바탕으로 양식업 등에 대한 면허권 조정 등 지역주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관련 시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